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연유법

주체96(2007)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12호로 채택

주체109(2020)년 7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1호로 수정

주체113(2024)년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9호로 수정보충

### 제 1 장 연유법의 기본

#### 제 1 조 (연유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유법은 연유의 생산과 수입, 수송과 보관, 공급과 판매, 소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연유의 량비를 없애고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 2 조 (연유의 정의)

연유는 현대 산업의 동력 원천의 하나이며 국가의 중요전략물자이다.

연유에는 료전기재와 가열설비의 연료로 쓰이거나 제조공업의 용매제로 쓰이는 휘발유, 디젤유, 중유, 석유, 윤활유 같은것이 속한다.

#### 제 3 조 (연유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관리원칙)

연유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관리는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연유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연유의 생산과 수입, 수송과 보관, 공급과 판매, 소비에 대한 장악과 지도,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 제 4 조 (연유관리 사업에 대한 지도)

연유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계획지도기관과 해당 중앙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해당 중앙지도기관은 산하단위의 연유관리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지도하여야 한다.

#### 제 5 조 (연유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연유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검찰기관과 사회 안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검찰기관과 사회 안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연유관리사업에 대한 법적 감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 **제 6조 (연유관리의 조건보장)**

중앙계획지도기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 로동행정 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관리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제 7조 (과학연구사업 강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의 생산과 보관, 관리, 리용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연구 및 도입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 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 **제 8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연유를 생산, 수입, 수송, 보관, 공급, 판매, 소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주민생활에 쓰이는 연유의 관리 질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민연료법에 따른다.

### **제 2 장 연유의 생산, 수입**

#### **제 9조 (연유생산의 기본요구)**

연유의 생산은 확보된 원유를 가공하여 공급원천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원유가공기업소는 연유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질좋은 연유를 생산하여야 한다.

#### **제 10조 (연유생산계획초안의 작성, 제출)**

연유생산은 연유생산계획에 따라 한다.

연유를 생산하려는 원유가공기업소는 원유의 확보량과 가공능력, 가공실수를 같은것을 타산하여 연유생산계획초안을 작성한 다음 중앙계획 지도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 11조 (연유생산계획의 승인, 시달)**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원유확보량, 연유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 생산가능성 같은것을 타산하여 제기된 계획초안을 검토하고 연유생산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된 연유생산계획은 중앙화학공업지도 기관과 원유가공기업소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 **제 12조 (연유생산의 정상화)**

원유가공기업소는 원유가공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생산조직과 지휘, 기술관리, 설비관리, 노력관리 같은 기업관리를 바로하여 연유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원유가공기업소는 계획된 연유를 시기 별, 현물지표별로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 **제 13조 (설비사고의 방지, 제정된 규격의 연유생산)**

원유가공기업소는 연유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키고 생산공정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 설비사고를 없애며 제정된 규격의 연유를 생산하여야 한다.

연유의 규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 **제 14조 (품질검사, 연유출하)**

품질감독기관과 원유가공기업소는 연유생산공정에 따르는 공정검사와 생산된 연유의 제품검사를 정해진 기준대로 하여야 한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제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연유는 생산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출하할 수 없다.

출하하는 연유는 탱크에서 가스성분을 충분히 제거하고 물이 섞이지 않은 것만 하여야 한다.

### **제 15조 (연유의 수입)**

연유의 수입은 중앙계획지도기관의 수입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한 연유량에 해당하는 정해진 비율의 국가납부몫을 우선적으로 바쳐야 한다.

연유의 수입절차와 방법은 무역관련법규에 따른다.

계획이 없거나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연유를 수입하거나 수입한 연유를 개별적 공민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제 16조 (연유수입정형의 료해장악)**

중앙계획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연유를 수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연유수입 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연유를 수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수입정형을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 무역지도 기관, 통계기관, 해당 기관에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 중앙세관지도기관은 연유수입 계획 실적자료, 세관통계자료 같은것을 정해진 기간안에 중앙계획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 제 3 장 연유의 수송과 보관

#### 제 17 조 (연유수송과 보관의 기본요구)

연유를 정확히 수송하고 보관하는것은 연유의 질과 량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바로하여 연유를 제때에 수송하고 그 보관 취급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지키며 연유의 수송 또는 보관과정에 연유를 루실하거나 못쓰게 만들거나 비법처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 18 조 (연유의 수송수단)

연유의 수송은 송유관으로 하거나 유조차나 유조선 같은 전문수송기재로 한다. 이 경우 전문수송기재는 해당 사회안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정기적인 기술검사를 받는다.

연유수송은 공급지도서 또는 판매송장이 있어야 할수 있다.

#### 제 19 조 (송유관에 의한 수송)

500t이상 되는 연유의 수송은 송유관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송유관관리운영기관, 기업소는 송유관의 관리와 경비조직을 바로하고 연유를 정확히 계량하여 수송하며 연유의 도중손실을 극력 없애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송유관수송도중에 생기는 자연손실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시기마다 비중을 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 20 조 (유조선에 의한 수송)

수입하는 연유와 해상집수송이 유리한 지역에 대한 연유의 수송은 유조선으로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조선의 항차조직을 바로하며 배짐증권에 반영된 연유량을 무역화물검수기관의 검수결과에 준하여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제 21 조 (유조차에 의한 수송)

연유생산지 또는 도착지로부터 공급지까지의 연유수송은 유조차로 한다. 이 경우 유조차연유수송을 책임진 인수원이 립회하여야 한다.

불량개소에 의한 손실 또는 립회인이 없이 연유수송과정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는 연유 수

송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 **제 22 조 (연유의 인수)**

연유인수원은 연유를 정확히 인수받아야 한다.

연유의 인수는 유조차의 연봉상태를 확인하고 송장에 반영된 현물이 정확한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족되는 량은 원인을 해명하여야 한다.

### **제 23 조 (연유의 신고부리는 작업)**

연유를 신고부리는 작업은 전문시설이 갖추어진 역과 부두, 공급지, 연유창 에서만 한다.

필요에 따라 전문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곳에서 연유를 신고부리는 작업을 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제 24 조 (연유의 보관관리)**

연유의 보관은 연유창에 한다.

연유를 보관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창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정해진대로 꾸리며 연유탱크와 공급설비, 계량계측수단 같은것을 갖추고 연유의 보관관리를 기술적특성에 맞게 하여야 한다.

연유창에는 연유공급소, 연유판매소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연유보관창고가 속한다.

### **제 25 조 (연유창의 승인, 안전거리보장)**

연유창은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나오거나 운영할수 있다.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은 연유창과 주민지역, 건물, 시설물사이의 안전거리를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연유보관능력 같은것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연유창을 승인없이 건설, 운영, 임대하거나 연유창이 아닌 곳에 연유를 보관할수 없다.

### **제 26 조 (연유의 검수, 입출고, 실사)**

연유를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검수와 입출고를 정해진대로 하며 연유의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연유의 검수, 입출고, 실사는 국가검정을 받은 계량계측수단을 리용하여 연유의 량과 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 27조 (연유의 종류별, 규격별보관)**

연유를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를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며 품질이 서로 다른 연유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쓰던 연유탱크에 다른 종류의 연유를 보관하려 할 경우에는 그것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제 28조 (화재의 방지대책)**

연유를 수송 또는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수송기재와 연유창에 소방기재를 정해진 대로 갖추며 연유취급과정에 화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재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다.

부득이하게 연유를 전문수송기재가 아닌 다른 수송기재로 운반하거나 연유창이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할 경우에는 소방안전대책을 세우고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29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국가는 연유보관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유창의 일정한 지역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한 경비성원을 배치한다.

출입금지구역은 안전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제 30조 (출입금지구역에서 금지사항)**

출입금지구역에는 울타리를 치며 그안에는 정해진 성원만이 출입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연유창출입금지구역가까이에서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제 31조 (원유제품자연손실 기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수송과 보관과정에 생기는 자연손실량계산을 내각이 승인한 원유제품자연손실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제 32조 (연유의 위탁보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를 해당 지역 연유공급소, 연유판매소에 위탁보관 시킬수 있다. 이 경우 보관시킨 연유는 정확히 등록하며 계약된 보관료를 내야 한다.

## **제 4장 연유의 공급과 판매**

### **제 33조 (연유공급, 판매의 기본요구)**

연유의 공급과 판매는 생산 또는 수입한 연유를 수요자에게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연유를 공급,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공급, 판매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수요자 기관, 기업소, 단체에 품질이 담보된 연유를 제때에 정확히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 **제 34조 (연유공급계획의 작성과 시달)**

연유를 공급받게 되어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수요문건을 정해진대로 작성한 다음 상급 기관을 거쳐 중앙계획지도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제기된 문건을 검토하고 국가적인 연유생산량과 수요량 같은것을 타산 하여 연유공급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며 그것을 연유공급기관과 수요자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 **제35조 (연유공급지령, 연유공급정형의 료해장악)**

연유공급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하는 연유는 연유공급기관의 공급지령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중요대상에 대한 공급지령을 먼저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연유공급계획에 따르는 연유공급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연유공급기관은 해당 연유공급소 또는 연유창의 연유공급정형을 중앙계획지도기관에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 **제 36조 (연유의 결제)**

연유를 공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은행돈자리를 통하여 연유공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당하는 연유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 **제 37조 (연유의 월 별공급)**

국가의 연유공급계획에 따르는 연유공급은 월별로 한다.

연유공급기관, 기업소는 연유공급계획과 공급지령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하는 연유에서 정해진 비율의 국가납부몫을 공제한 다음 연유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납부몫으로 구성된 연유는 해당 기관, 기업소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연유공급계획과 공급지령이 없이 연유를 공급할수 없다.

### **제 38조 (연유의 판매 단위)**

연유의 판매는 생산 또는 수입한 연유를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팔아주는 봉사 사업이다.

연유의 판매는 국가의 승인과 연유판매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한다.

연유판매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를 판매하기 위하여 연유판매소를 내올수 있다. 이 경우 기  
구조직기관, 영업허가기관,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9조 (연유공급소, 연유판매소의 배치)**

연유를 공급, 판매하게 되어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공급소 또는 연유 판매소를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연유수요, 연유공급, 판매능력, 교통조건, 안전거리 보장조건, 생태환경보호조  
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현대적으로 꾸리며 수요자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연유공급소, 연유판매소의 건설,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서는 건설법과 소방법, 이 법 시행  
규정, 세칙에서 정한데 따른다.

### **제 40조 (연유공급, 판매 가격, 국가납부)**

연유의 공급, 판매는 중앙가격지도기관이 정한 가격으로 한다.

중앙가격지도기관은 연유공급, 판매가격을 연유의 수입가격과 생산, 수송원가, 보관비 같은것  
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연유를 공급,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비율의 국가납부금을 우선적으로 바쳐야  
한다.

### **제 41조 (연유의 판매 방법)**

연유판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봉사, 경 영활동에 필요한 연유를 구매하려는 기관, 기업  
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연유판매소를 통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량에 따라 대  
금을 결제한 다음 전표 또는 연유표, 령수증을 발급한다.

연유표는 정해진 기간까지 해당 연유판매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리용할수 있다.

### **제 42조 (연유의 계 량, 판매)**

전표 또는 연유표를 접수한 연유판매소는 그에 해당하는 연유를 원유제품자연 손실기준대로 정  
확히 계량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조차 또는 연유탱크 같은것을 리용하여 연유를 수송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하여서는 해당 사회 안전기관의 수송승인문건을 확인한 다음 판  
매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 43 조 (연유의 송달)

연유공급소, 연유판매소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주문에 따라 연유를 송달하여 줄수 있다. 이 경우 주문송달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송달비를 내야 한다.

### 제44조 (연유공급, 판매자료의 기록, 보관)

연유를 공급,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공급, 판매자료를 해당 대장에 정확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연유공급, 판매정형을 월 1차이상 실시하며 남거나 모자라는것은 그 원인을 해명하고 재정 회계계산체계에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 45 조 (연유판매에서의 금지 행위)

연유판매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국가의 승인과 연유판매계획이 없이 연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연유비중을 정확히 게시하지 않거나 제멋대로 조절하여 연유를 판매하는 행위
3. 질낮은 연유를 섞거나 검정받지 않은 계량계측수단, 연유공급기를 리용하여 연유를 판매하는 행위
4. 제정, 등록된 연유판매가격을 제멋대로 변경하여 연유를 판매하는 행위
5. 연유구입, 판매자료를 거짓기록하거나 루락시키는 방법으로 조성한 연유를 판매하는 행위
6. 연유를 등록하지 않거나 은닉시켜놓고 판매하는 행위
7. 연유판매 권이 없는 단위 또는 개별적공민에게 연유를 넘겨주어 상적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개별적공민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외피를 쓰고 연유를 판매하는 행위
9. 개별적공민이 연유를 판매하는 행위
4. 6조 (연유판매정형의 료해장약)

중앙계획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연유판매기관, 기업소, 단체의 연유판매 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연유판매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판매계획수행자료를 중앙계획지도기관과 통계기관, 해당

기관에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유의 구입 및 판매가격과 그 수량, 구매자확인 정형 같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5 장 연유의 소비

### 제 47 조 (연유의 소비에서 지켜야 할 요구)

연유의 소비를 바로하는것은 연유를 절약하고 리용효률을 높이기 위한 기본 담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를 정해진 대상과 용도에 맞게 소비하며 연유량비를 없애고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 제 48 조 (연유의 구입, 계획적소비)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연유를 승인된 연유공급소, 연유판매소를 통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연유를 구입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소비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소비하여야 한다.

### 제 49 조 (연유소비기준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소비설비를 등록하고 연유소비기준을 지키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연유소비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계획지도기관이 한다.

### 제 50 조 (연유의 리용용도)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구입한 연유를 생산과 봉사, 경영활동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연유와 연유표를 밀매하거나 연유표를 위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 51 조 (연유의 교환)

연유공급소, 연유판매소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다른 종류의 연유와 교환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연유교환비율은 정해진 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 제 52 조 (연유량비의 근절)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연유소비설비의 공회전을 없애며 필요없이 료전기재의 발동을 걸어놓거나 빈차운행같은것으로 연유를 량비하지 말아야 한다.

### 제 53 조 (연유소비설비의 교체)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혁신운동을 벌리고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연유를 많이 소비 하는 설비를 적게 쓰거나 쓰지 않는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연유소비가 많은 설비는 제작, 수입, 판매할수 없다.

#### **제 54조 (연유의 손실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보관시설과 연유소비설비에 대한 기술검사와 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연유의 손실을 극력 줄여야 한다.

#### **제 55조 (연소효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대용연유개발)**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연유의 연소효률을 높이고 폐유, 폐기폐설물 같은것을 회수, 리용하여 대용연유를 개발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연유소비설비의 연소효률을 높이고 대용연유를 개발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대용연유는 해당 기관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생산, 리용, 판매할수 있다.

#### **제 56조 (기술지도서의 작성)**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연유관리기술지도서를 작성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 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관리기술지도서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 57조 (연유소비정형에 대한 료해장악, 총화)**

중앙계획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연유소비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소비정형을 중앙계획지도기관과 통계기관, 해당 기관에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 **제 6 장 법적 책임**

#### **제 58조 (민사적 책임)**

이 법을 어겨 재 산상손해를 발생 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원상복구, 손해 보상,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 **제 59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1. 승인없이 또는 전문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곳에서 연유를 신고부리는 작업을 하여 사고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20만~50만원
2. 연유수송, 보관과정에 화재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0만~150만원, 국민에게는 10만원
3. 이 법 제45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80만~150만원, 국민에게는 8만~10만원
4. 연유와 연유표를 밀매하였거나 연유표를 위조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0만~150만원, 국민에게는 10만원
5. 이밖에 연유를 비법적으로 생산, 수입, 공급, 판매, 구입, 소비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의 2~5배

#### **제 60 조 (변상처벌)**

이 법을 어겨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책임 있는자에게 해당 손해를 변상시킨다.

#### **제 61 조 (몰수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되었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해당 자금과 설비, 물품을 몰수한다.

1. 수입계획이 없이 또는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연유를 수입하였을 경우
2. 공급지도서 또는 판매송장이 없이 연유를 수송하였을 경우
3. 승인없이 연유창이 아닌 장소에 규정된 량을 초과하여 연유를 보관하였을 경우
4. 연유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은닉시켜놓았을 경우
5. 연유공급, 판매, 소비자료를 거짓기록하였거나 루락시키는 방법으로 연유와 그 대금을 비법조성, 리용하였을 경우
6. 연유를 비법적으로 생산, 보관하였을 경우
7. 연유와 연유표를 밀매하였을 경우

8. 개별적공민이 상적행위를 목적으로 연유를 보관하였을 경우
9. 연유판매권이 없는 단위 또는 개별적공민과 비법거래하였거나 상적행위를 묵인, 조장시켰을 경우
10. 개별적공민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외피를 쓰고 연유를 팔거나 샀을 경우

### **제 62 조 (중지 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생산, 수송 및 경영활동을 중지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1. 연유보관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2. 소방수단이 없거나 검사 또는 승인받지 않은 수송수단을 리용하여 연유를 수송하였을 경우
3. 연유창을 승인없이 건설, 운영하였을 경우
4. 화재방지대책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5. 승인없이 또는 안전거리를 보장하지 않고 연유공급소, 연유판매소를 건설, 운영하였을 경우
6. 검정받지 않은 계량계측수단, 연유공급기를 리용하였거나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연유를 공급, 판매하였을 경우
7. 제정, 등록된 연유공급, 판매가격을 어기고 연유를 공급, 판매하였을 경우
8. 구입한 연유를 정해진 대상과 용도에 맞지 않게 소비하였을 경우
9. 연유소비기준을 초과하는 설비를 제작, 수입, 판매하였을 경우
10. 생태환경보호대책을 바로세우지 않고 연유를 생산하여 환경오염을 일으켰을 경우

### **제 63 조 (경고, 엄중경고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처벌을 준다.

1. 연유생산, 공급계획을 바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미달하였을 경우
2. 불합격품을 생산하여 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연유보관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연유를 루실시켰거나 못쓰게 만들었거나 화재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4. 승인없이 연유창을 건설, 운영, 임대하였거나 연유창이 아닌 장소에 규정된 량을 초과하여 연유를 보관하였을 경우
5. 연유수요를 불구하고 공급받아 소비하였거나 공급받은 연유를 류용, 량비하였을 경우
6. 연유공급을 제때에 하지 않아 해당 단위의 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정해진 국가납부몫 또는 납부금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
8. 연유공급계 획과 공급지령 이 없 이 연유를 공급하였을 경우
9. 검정받지 않은 계량계측수단, 연유공급기를 리용하여 연유를 공급, 판매하였을 경우
10. 제정, 등록된 연유공급, 판매가격을 어기고 연유를 공급, 판매하였을 경우
11. 연유공급, 판매, 소비자료를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지 않아 그 소비정형을 알수 없게 하였을 경우
12. 연유표를 밀매, 위조하였을 경우
13. 연유소비기준을 초과하는 설비를 제작, 수입, 판매하였을 경우
14. 연유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위법행위를 묵인, 조장시켰을 경우
15. 연유의 수입, 공급, 판매, 소비정형을 제때에 정확히 내지 않았을 경우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엄중경고처벌을 준다.

#### **제 64조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다음의 경 우에 는 책 임있는자에 게 3개 월 이 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 벌을 준다.

1. 연유를 루실시켰거나 못쓰게 만들었거나 화재사고를 일으켜 재산적손실을 주었을 경우
2. 승인없이 또는 안전거리를 보장하지 않고 연유공급소, 연유판매소를 건설, 운영하였을 경우
3. 연유공급, 판매, 소비자료를 거짓기록하였거나 루락시켜 연유를 비법적으로 조성, 소비하였을 경우
4. 연유판매권이 없는 단위 또는 개별적공민에게 연유를 넘겨주어 상적행위를 하게 하였을 경우
5. 개별적공민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외피를 쓰고 연유를 팔거나 샀거나 연유 밀매행위를 묵인, 조장시켰을 경우

6. 연유와 그 대금을 비법처분하였을 경우
  7. 이밖에 연유를 비법적으로 생산, 수입, 보관, 공급, 판매, 구입, 소비하였을 경우
-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처벌을 준다.

#### **제 65조 (강직, 해임, 철직처벌)**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강직, 해임, 철직 처벌을 준다.

#### **제 66조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 적 책임을 지운다.

### **제 7장 부 직**

#### **제 67조 (시행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9호 [주체113(2024)년 1월 17일] 로 수정보충한 연유법은 주체113(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